

#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관한조례안

|             |     |
|-------------|-----|
| 의<br>번<br>호 | 359 |
|-------------|-----|

제출년월일 : 2002.  
제출자 : 김포시장

## □ 제 목 :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회에관한조례안

### □ 제정이유

-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지역 청소년들을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선도·보호하기 위하여
- 청소년기본법제22조 규정에 의거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 위원의 자격·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 □ 주요골자

-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절차 및 자격 등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를 정함(안 제4조)
-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에 대한 사항 명시(안 제9조)

### □ 조례제정안 : 민침

### □ 관계법령 밟아서 : 민침

### □ 기타 참고사항 : 민침

### □ 사진임박예고 : 비대상

##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동·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내 유익환경 조성
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지도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시행령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업소 및 유해한 행위 종사자.
3. 청소년지도활동에 열의가 부족하여, 활동이 부진하고 계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자
4. 고령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등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이 어려운 자
5. 기타 공·사생활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자

제7조(증표교부) 시장은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임기)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0조(필요경비등 지원) 시장은 지도위원의 활동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수당과 여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김포시청소년지도위원회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제7조관련)

| (앞 면)    | (단위 : cm) | (뒷 면)   |
|----------|-----------|---|
| 청소년지도위원회 | 0.3       | 성명<br>주민등록번호<br>주소<br>위 사람은 청소년기<br>본법 제22조의 규정에<br>의한 청소년지도위원<br>임을 증명함<br>⑥ (인) |
| ①        | 4.65      | 이 증명서를 주우신 분은<br>가까운 우체통에 넣어<br>주시기 바랍니다.   |
| ②        | 0.75      |   |
| ③        | 0.75      |   |
| ④        | 0.75      |   |
| ⑤        | 0.3       |   |
|          | 4.9×7.5   |   |

(비고) 1. 청소년지도위원회의 색상 및 지질은 인두색 인쇄용지 120g/m<sup>2</sup>으로 한다.

2. 청소년지도위원회의 ①내지 ⑥의 판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한다.

- ① 사진(4.9cm×4cm)
- ② 청소년지도위원회 번호
- ③ 성명
- ④ 소속명
- ⑤ 철인
- ⑥ 김포시장

## ●青少年基本法

소관부처 : 문화관광부

|    |            |  |
|----|------------|--|
| 制定 | 1991·12·31 | 法律第4477號                               |
| 改正 | 1993·3·6   | 法律第4541號(政府組織法)                        |
|    | 1994·1·7   | 法律第4719號(體育施設의 설치·이용에 관한法律)            |
|    | 1995·12·29 | 法律第5076號                               |
|    | 1997·12·13 | 法律第5453號(行政節次法의施行에 따른公認會計士法등의整備에 관한法律) |
|    | 1999·1·18  | 法律第5635號                               |
|    | 1999·1·29  | 法律第5733號(政府出捐研究機關등의設立·운영 및 육성에 관한法律)   |
|    | 1999·2·8   | 法律第5893號(河川法)                          |
|    | 1999·2·8   | 法律第5911號(公有水面埋立法)                      |
|    | 1999·2·8   | 法律第5914號(公有水面管理法)                      |
|    | 2001·12·31 | 法律第6569號                               |

### 第1章 總 則

第1條 (目的) 이 法은 青少年의 權利 및 責任과 家庭·社會·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의 青少年에 대한 責任을 정하고, 青少年育成政策에 관한 基本的인 사항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2條 (基本理念) ①青少年이 社會構成員으로서 성당하게 대우받고 權益을 보상 받으며, 스스로 생각하고 자유롭게活動할 수 있도록 함께 아울러 未來社會의 主役으로서 國家와 社會가 필요로 하는 긴선한 民主市民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이 法의 基本理念으로 한다. <改正 99·1·18>

②第1項의 基本理念를 具現하기 위한 長期的·綜合的 青少年育成政策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 각號의 사항을 그 推進方向으로 한다. <改正 99·1·18>

1. 青少年의 創意性과 自律性에 기초한 能動的 삶의 實現
2. 青少年의 成長與件과 社會環境의 개선
3. 民主·福祉·統一祖國에 대비하는 青少年의 資質向上

第3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각號와 같다. <改正 95·12·29, 2001·12·31>

1. “青少年”이라 함은 9歲이상 24歲이하의 者를 말한다.
2. “青少年育成”이라 함은 青少年의 福祉를 增進하고, 青少年의 修鍊活動을 지원하며, 青少年交流를 振興하고, 社會與件과 環境을 青少年에게 有益하도록 개선하여 青少年에 대한 教育과 상호 补完함으로써 青少年의 균형있는 成長을 돋는 것을 말한다.

로 한다.

### 第3章 青少年修鍊活動의 지원등

**第18條 (修鍊거리의 開發)**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거리를 그 이용대상 및 年齡과 利用場所등을 綜合的으로 고려하여 分野別로 균형있게 開發·普及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修鍊거리의 開發·普及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9條 (青少年指導者의 養成)** ①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指導者の 養成과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改正 95·12·29>

②및 ③削除 <95·12·29>

**第20條 (青少年指導士)** ①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青少年關聯 분야의 經歷 기타 資格을 갖춘 者로서 檢定에 합격한 者에게 青少年指導士의 資格을 부여한다. <改正 99·1·18>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青少年指導士가 될 수 있다.

1. 未成年者·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5.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③青少年指導士의 等級, 資格檢定, 研修,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第20條 (청소년지도사)** ①文化觀光部長官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青少年關聯 분야의 經歷 기타 資格을 갖춘 者로서 차격검정에 합격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수를 마친 자에게 청소년지도사의 資格을 부여한다. <改正 99·1·18, 2001·12·31: 施行日 2002·7·1>

②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청소년지도사가 될 수 있다. <改正 2001·12·31: 施行日 2002·7·1>

1. 未成年者·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第16條 教育・學術 第7章 體育・青少年育成 青少年基本法

4. 禁錮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猶豫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者  
5. 法院의 判決 또는 法律에 의하여 資格이 정지 또는 상실된 者  
③ 청소년지도사의 等級, 資格檢定, 研修, 資格證의 交付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2001·12·31; 施行日 2002·7·1>  
(全文改正 95·12·29)

第20條의2 削除 (99·1·18)

第21條 (청소년지도사의 配置등) ① 修鍊施設 및 青少年團體는 青少年의 건전한 修鍊活動을 指導하게 하기 위하여 청소년지도사를 配置하여야 한다. <改正 2001·12·31>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配置對象 및 配置基準은 文化觀光部令 으로 정한다. <改正 99·1·18, 2001·12·31>

③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修鍊施設 또는 青少年團體등에서 自願하여 青少年指導를 행하는 者에 대하여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費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全文改正 95·12·29)

第22條 (青少年指導委員) ① 市長·郡守·區廳長(自治區의 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은 青少年의 指導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青少年指導委員을 위촉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青少年指導委員의 資格·委嘱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條例로 정한다. <改正 95·12·29>

第23條 (青少年團體의 육성·지원등)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青少年團體의 組織과 活動에 필요한 行政的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豫算의 범위안에서 그 活動 등에 필요한 經費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개인·法人 또는 團體는 青少年團體의 施設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金錢 기타 財產을 出捐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보조범위등에 관하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4條 (收益事業) ① 青少年團體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認可官廳의 승인을 얻어 修鍊活動과 관련한 收益事業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益事業의 범위, 收益金의 사용등에 관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25條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 ① 青少年團體는 青少年育成등을 위한 다음 各號의 活動등을 하기 위하여 文化觀光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韓國青少年團體協議會(이하 "協議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3·3·6, 95·12·29, 99·1·18>

1. 會員團體가 행하는 사업과 活動에 대한 협조·지원

제17조의5 (자격검정) ①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자격검정을 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8·7>

②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 응시자격의 기준과 자격검정의 과목 및 방법은 각각 별표 1의2 및 별표 1의3과 같다. <신설 99·8·7>

③기타 청소년지도사의 등급별 자격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8·7>

(본조신설 96·6·29)

제17조의6 (청소년지도사자격증 교부 및 연수)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7조의5의 규정에 의한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 등급별로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지도사자격증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성의 연수를 실시한다. 이 경우 인수의 경비는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연수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증교부에 관한 업무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수에 관한 업무를 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기타 청소년지도사의 자격증 교부 및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9·8·7)

제17조의7 (수수료) 청소년지도사의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8·7)

제18조 및 제19조 삭제 <99·8·7>

제20조 내지 제23조 삭제 <96·6·29>

제24조 (청소년지도위원) ①및 ②삭제 <96·6·29>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6·29>

1. 청소년의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수련활동의 여전조성·장려 및 지원

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

4.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의 유익한 환경의 조성 및 유해 환경의 정화활동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지도위원에게 청소년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위원이 제3항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여비·교육기회의 제공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96·6·29>

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읍·면·동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청소년지도협의회는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개정 96·6·29>

제25조 (청소년단체의 지원 및 보조의 범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에 시키거나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96·6·29>

1. 청소년단체 조직의 유키·발전을 위한 지원 및 운영경비 보조

2. 수련활동사업에 관한 지원 및 사업비 보조

3. 국내·외 행사에 필요한 시설·설비등의 지원 및 행사비 보조

4.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수련시설의 설치등에 필요한 국·공유 재산의 대부· 사용 및 수익을 위한 지원

5. 수련거리의 개발·보급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6. 청소년지도자 연수 및 국제교류등에 관한 지원 및 보조

7. 기타 청소년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청소년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지원 및 보조

제26조 (수익사업의 범위등)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단체가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건물·토지 및 시설장비등의 임대

2. 청소년관련정보 및 각종 간행물의 출판·판매

3. 수련활동장비·기자재 및 기타 수련활동관련물품의 제작·판매

4. 기타 인가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도시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자는 도시계획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전용지역이 지정된 경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 우선하여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수립시 이를 반영하고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0. 7. 1>

제56조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 제55조제4항 및 법 제48조제3항에서 "청소년활동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다음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93. 3. 6. 99. 8. 7>

1. 생활권수련시설
2.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골프장 및 스키장 시설을 제외한다)
3. 기타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57조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 및 유해한 행위의 종류·범위) ① 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라 함은 다음의 영업을 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96. 6. 29. 97. 2. 24. 99. 8. 7. 2001. 6. 30>

1.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단란주식영업 및 유혹주점영업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업·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영업
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목적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행행위업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5. 담배사업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소매업
6.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영업 및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유독물영업
7.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노래연습장(연소자실을 설치한 노래연습장을 제외한다).
8.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업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영업

② 법 제48조제4항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행위"라 함은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93. 3. 6. 99. 8. 7>

第16編 教育·學術 第7章 體育·青少年育成 청소년기본법시행령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 또는 이용을 용인하는 행위
2. 청소년에게 해로운 물품·영상을 또는 인쇄물등을 제공·판매하거나 이용등을 용인하는 행위
3. 청소년의 사행심을 조장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
4. 기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제7장 한국청소년상담원등

제58조 삭제 <99·8·7>

제59조 (잉여금의 처리)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다음 연도에 이월한다. <개정 99·8·7>

제60조 (사업계획서의 제출) ①법 제5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수액: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8·7>

1. 사업의 개요(목표·방침·주요사업·소요예산 및 세부구성 등)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의 산출기초
3. 사업의 효과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한 내용과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9·8·7>

제61조 (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법 제59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9·8·7>

1. 삭제 <99·8·7>
2. 당해연도의 사업계획과 집행실적대비표
3. 검사를 한 공인회계사의 의견서와 감사의 의견서
4. 기타 결산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참고서류

제62조 삭제 <99·8·7>

제63조 (지방청소년상담실의 운영) ①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지방청소년상담실에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정보통신망

# 경기도

우 441-701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3가1번 / 전화 (031)249-2542 / 팩스 (031)249-2549  
처리과 청소년과 과장 총동표 사무관 최갑선 담당자: 정선구

문서번호 청소년82570—10293  
시행일자 2002.03.06 ( 1년 )  
공개여부 공개  
수신 받는곳 참조  
참조 청소년업무 담당과장

|        |       |            |             |
|--------|-------|------------|-------------|
| 선<br>람 | 과장    | 이준수        | 지<br>시      |
| 접<br>수 | 일자    | 2002.03.06 | 결<br>재      |
|        | 시간    | 오전 09:22   | ·<br>공<br>람 |
|        | 번호    | 10929      | 팀장          |
| 처리과    | 문화체육과 |            | 전왕희         |
| 담당자    | 직원    | 박 맥        |             |
| 심사자    |       | 심사일        |             |

제목 2002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지침 통보

1. 문화관광부 청지 82540-58(2002. 2.6)호와 관련입니다.

2. 2002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침과 2001년도 하반기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을 복임과  
같이 통보하니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청소년지도위원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 지도위원 및 지도위원 협의회는 표창을 하는 등  
사기진작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활동이 부진한 지도위원 및 지도위원협의회는 지도위원교체등을  
통하여 청소년지도위원이 지역청소년들을 위한 민간 핵심조직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나가  
기 바랍니다.

붙임 : 가. 2002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침 1부.

나. 2001년도 청소년지도위원 활동실적 1부. 끝.

경기도지사



전경 여성정책국장

수신처: 가정청소년과장, 16\_더비\_고양연천제외, 고양시청, 연천군청

# 2002년도 청소년지도위원 운영지침

## 목적 및 배경

- 지역의 지도자격인 청소년지도위원들로 하여금 내일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들을 각종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선도·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건전한 사회환경분위기 조성을 물론,
- 청소년지도위원들이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관계법령 숙지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역할에 대한 기본소양을 습득하게 하여 수준높은 청소년지도 위원으로서의 육성과 그에 따른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기본방향

- 올바른 청소년상 정립을 위해 헌신할 청소년지도위원 육성
- 정부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지도방법 숙지등 지질향상과 전문성 제고
- 청소년지도위원의 활동 활성화로 청소년보호의 국민적 참여 분위기 확산과 건전한 사회환경분위기 조성 도모
- 청소년지도위원 위촉 등 관련사항을 청소년기본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 (조례 미제정 시군은 조속히 제정)
- 표창등 청소년지도위원 사기진작 방안과 우수시책을 발굴하여 시행